

#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5호중 “제6조제2항의”를 “제7조제2항의”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입찰가액은 순수예상액 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낙찰가격이 같을시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②수탁금은 6개월분 선납으로 한다.

부칙 제3항중 “제4조의”를 “제5조의”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3”을 “별표2”로, “별표4”를 “별표3”으로, “별표5”를 “별표4”로, “별표6”을 “별표5”로 한다.

## 수 정 안 대 비 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주차거부금지)----- ----- 1~4.(생략) 5. 제6조제2항의-----	제3조(주차거부금지)----- ----- 1~4.(개정안과 같음) 5. 제7조제2항의-----
제5조(위탁관리)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이하“관리수탁자”라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가 설립할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제5조(위탁관리)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며, 낙찰가액은 순수예상액기준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이 같을시에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개 정 안	수 정 안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③(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경과 조치)-----제4조의----- -----.</p>	<p>②수탁금은 6개월분 선납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③(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경과 조치)-----제5조의----- -----.</p>

의안번호	제/08호
의결 년월일	1999.8. (제 회)

#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8./8.

# 서산시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8
----------	-----

제출년월일 : 1999. 8. 18.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1. 개정이유

주차장법(1999. 2. 8 법률제5902호), 같은법시행령(1999. 3. 17 대통령령제 16187호, 1999. 6. 30 대통령령제16428호), 같은법시행규칙(1999. 3. 12 건설교통부령제177호)의 개정으로 이미 효력이 상실되어 현실과 불합리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현행 내용 체계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급지별, 차종별로 1구획당 30분을 기본으로 30분 초과시 10분마다 주차요금을 정하고 주차요금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는 100분의 50, 자동차10부제운행 차량은 100분의 10을 할인하고, 국세성실납세자는 면제토록 하는 한편, 정해진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주차요금 4배의 가산금을 부과토록함(안 제4조별표 1 및 제2항).

나. 시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을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과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이 있고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으로하고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안 제5조).

다.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는 타시·도 등록자동차,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함(안 제7조제2항).

## 서산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서산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산시주차장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행위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 제2장 공영주차장

**제4조(주차요금 등)** ①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법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표지중 주차장표지에 의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등은 별표 3에 의한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징수에 관한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표 4에의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 표지는 별표 5에 의한다.

**제7조(주차요금징수방법 등)** ①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타시·도 등록자동차

2. 주차장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⑤제4항의 단서의 경우에 당해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잔여시간에 대한 금액

2. 월정기권 :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

**제8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주차방법 및 배치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은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사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제3장 부설주차장

**제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제10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의한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세대당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용면적 60평방미터이하인 경우는 세대당 0.5대이상
2. 전용면적 60평방미터초과 85평방미터이하인 경우는 세대당 0.7대이상
3. 전용면적 8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세대당 1대이상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장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중 부설주차대수의 설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2. 기타시설은 주차대수의 1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 및 안내표시기준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다.

**제12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주·야간 월정기 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용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 제4장 보 칙

**제13조(과징금처분)** ①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

③(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관리를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 주차장 주차 요금표

(단위:원)

급 지 구 분	차 종 별	1회주차요금 (1구획당)		1일주차 요 금	월정기주차요금	
		최초30분	30분초과시 10분마다		주 간	야 간
1급지	소형자동차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400	200	6,000	36,000	26,000
	보통자동차 (특수 대형 포함)	800	400	12,000	65,000	45,000
2급지	소형자동차 (승용차 및 1톤 이하 화물차)	200	100	3,000	30,000	22,000
	보통자동차 (특수 대형 포함)	400	200	6,000	45,000	33,000

<비 고>

1. 1회주차시간이 30분이내는 30분을 적용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가. 4월~10월 08:00~20:00
  - 나. 11월~3월 09:00~19:30
3. 주차장 급지는 동지역을 1급지로 읍·면지역은 2급지로 한다.
4. 다음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세성실납세사, 경형자동차, 자동차10부제운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나.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50을 할인한다.
  - 다. 경형자동차(배기량이 800cc미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라.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은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마. 자동차10부제운행(자동차등록번호의 끝자리 수가 운행일자와 같은때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10을 할인한다.

[별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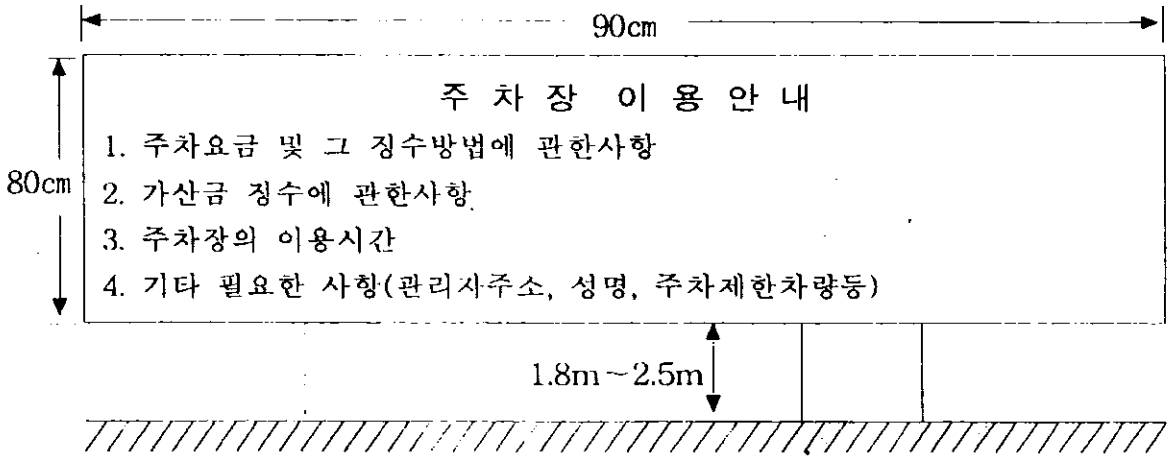
**공영주차장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제5조제2항 관련)

구 분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순수입예상액 기준의 50퍼센트의금액	3월단위로 선납 및 기타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5조제1항제1호 이외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수의계약	“	“
개인	경쟁계약	입찰가격	선납 및 6월 분납

[별표 3]

노상주차장이용안내표지(제6조제2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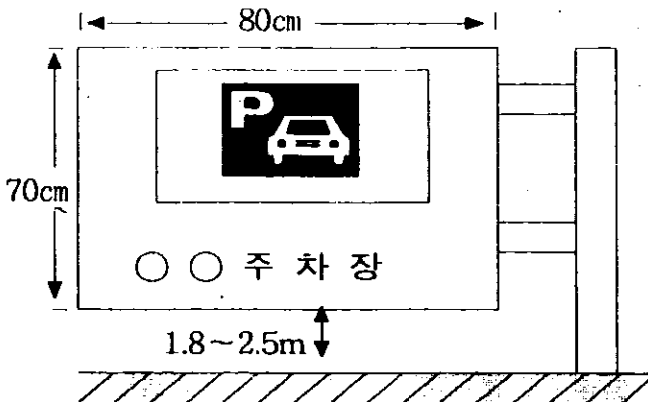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 색 채
  - 바탕 : 녹색
  - 문 자 : 흰색(고딕)

[별표 4]

노외주차장표지(제6조제3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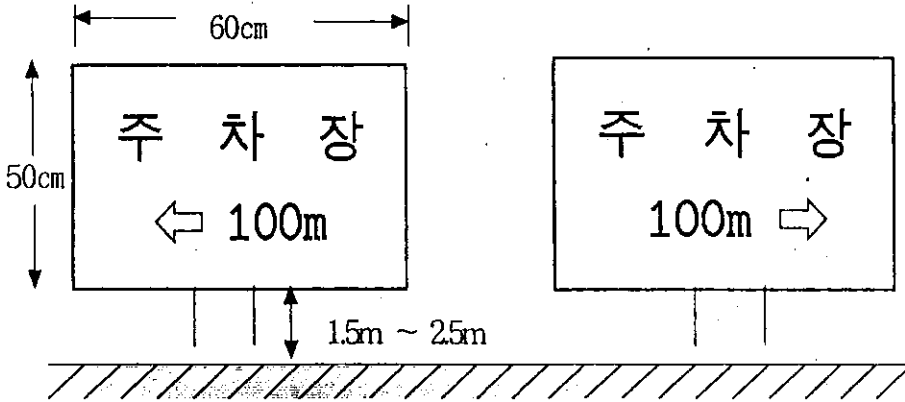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 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한다.

[별표 5]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제6조제4항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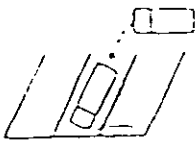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장소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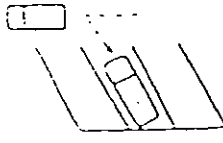
##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8조제1항 관련)

### 1. 주차방법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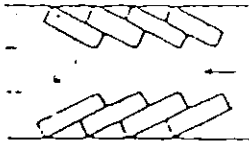
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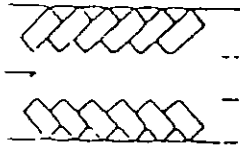
전진주차 전진발차

###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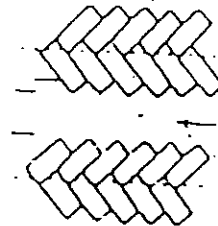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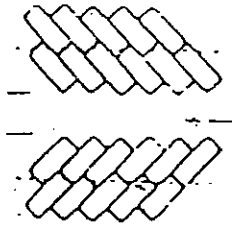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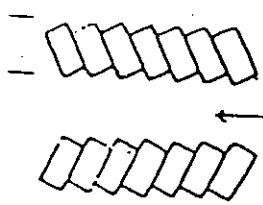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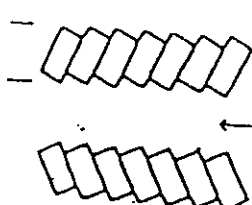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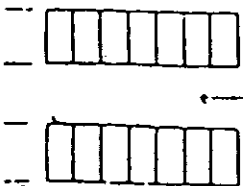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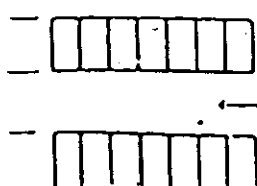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야. 90° 후퇴주차



[별지 제1호서식]

## 공용주차장무상사용증

(제12조제1항관련)

9cm	
6cm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서 산 시 장 (인)

<비 고>

- 바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부교해 드립니다.